

# 발명진흥법 공포

발명진흥법이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 24일 법률 제4757호로 공포됨으로써 발명진흥에 관한 업무가 더욱 본격화되게 되었다.

동 법은 지난 2월 金杞培 의원(민자)을 비롯한 국회의원 172인의 발의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공포한 발명진흥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아래 단 한번의 개정작업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법으로 새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은 發明振興을 통한 국내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의 발명분위기를 진작하고,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발명성과의 급속한 권리화 및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발명진흥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그 주요골자로는 ▲특허청장 주관 발명진흥연차대회 개최 ▲학생발명반 육성 및 산업체산권 교과과정 반영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확대 ▲특허기술정보 센터 운영 ▲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확대 ▲우수발명의 실용화 촉진 ▲발명진흥단체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발명진흥법의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

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

4. “종업원 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용자 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개인발명가”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 등에서 산업체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2.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발명의 사업화 촉진
  4. 기타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4조(발명진흥연차대회 개최) ① 정부는 매년 5월 19일에 발명진흥연차대회를 개최한다.
- ② 제 1항의 발명진흥연차대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발명에 관한 다음 각목의 시책발표
    - 가. 발명진흥종합시책 실적의 평가 및 계획
    - 나.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 실적의 평가 및 계획
  2. 발명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진흥에 관련된 사업

## 제2장 발명의 진흥

- ### 제 1절 발명에 대한 인식제고
- 제 5조(발명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발명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발명활동의 촉진
  3. 우수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및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4. 발명활동에 대한 산업체산권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체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유공자 및 우수발명의 발굴·포상
  7. 기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와 발명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6조(학생발명활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교육법 제 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나아가 기술개발인력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학교에 학생발명반의 설치·운영과 그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각급학교 학생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한 우대 조치
  3. 각급학교의 당해 학교내 또는 각급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발명촉진 행사에 대한 지원
  - ③ 정부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체산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산업체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조(발명공작교실의 설치) ① 정부는 학생, 청소년 및 국민의 발명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자 등의 시설물에 부설하여 발명공작실습을 위한 시설물(이하 “발명공작교실”이라고 한다)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발명 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공작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절 직무발명의 촉진

제 8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① 정부는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발명의 승계)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0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발명보상규정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간의 이견조정
  3. 기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 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등)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 사용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

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보상 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종업원 등은 직무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 의장등록을 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 등)  
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 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 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법 등의 준용)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실용신안법 제11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공급의 효율화

제15조(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이 기술개발과 제를 선정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자 등이나 국민에 대한 국내·외 정

## 보제공 실적 및 연차별 추진계획

2.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에 대한 외부용역 계획
  3. 산업재산권 정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용자 등에 대한 지원 계획
  4. 산업재산권전산화사업의 전년도 실적평가 및 연차별 추진계획
  5. 기타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련된 사항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정보화사업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진흥연차대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기술정보센터)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해 특허기술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행기술 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
  4. 기타 선행기술 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 ③ 특허청장은 정보센터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기존의 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 정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보센터의 허가취소 등) 특허청장은 정보센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18조(선행기술조사)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의 신속·정확한 심사처리를 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
  3. 기타 선행기술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특허관리점담부서 설치)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의 특허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제공
  2.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교육
  3. 기타 특허관리전담부서설치에 관하여 필

## 요한 사항

제 20조(특허관리비용 지원)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 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각급학교의 학생,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 21조(발명의 평가기관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체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발명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우선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평가 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기준,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2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 23조(금융기관 등의 우선 자금지원) ①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 등이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평가결과를 붙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당해 발명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우수발명에 대한 투자 및 융자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2. 담보 및 신용보증 관련사항

3. 기타 우수발명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제 24조(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① 산업체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 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산업체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2. 산업체재산권의 실시권 허여의 알선(산업체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고, 알선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기타 산업재산권자의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알선센터의 설립,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할 수 있다.

④ 알선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출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작품제작 지원) 정부는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각종 규격의 개정요청)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이 기존규격과 달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물품구매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당해 규격을 관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발명에 의한 제품이 구매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격의 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 조달기금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다.

제28조(세제지원)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여 당해 당사자가 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해를 목적으로 한 알선·조정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2.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3.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4.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촉진) ① 특허청장은 사용자 등이 다른 사용자들과 산업재산권의 공유 또는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공동소유 또는 통상실시권의 상호허여(이하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제공
2.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3. 기타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

자 등이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대상 기술분야에 대한 공동기술 개발시 그에 따른 비용을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공업발전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지적재산권 연구소) ① 사용자 등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동향분석과 신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지적재산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연구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업비의 일부보조

2.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기타 지적재산권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제3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①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진흥회가 아닌 자는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사업) ①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2.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특허관리요원의 양성

4.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공보의 보급

5.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6.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진흥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의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업계획서 등) ① 진흥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진흥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35조(기금의 조성 등) ① 진흥회는 이 법에 의한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업으로 발생된 수익금

2. 수익자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장려행사 등 발명활동의 촉진
  2. 우수발명작품의 제작지원
  3.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허여와 창업자금지원 등  
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정보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조사 및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발명가에 대한 무료변리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 자금지원시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기타 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장 보 척

제 3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특허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정보센터 또는 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 37조(청문) 특허청장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정보센터, 평가기관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보센터, 평가기관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장 벌 칙

제 38조(벌칙) ① 제 12조의 규정에 위반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의 죄는 사용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 알선센터 및 진흥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40조(과태료) ① 제 1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6조 제 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 32조 제 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대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록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발명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한국발명특허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그 재산을 출연하여 한국발명진흥회를 설립할 것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은 법인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발명진흥회가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발명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발명보호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영업비밀 상담 및 교육 안내

특허청 조사과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기업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영업비밀 관리상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의 범위, 영업비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해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귀사(귀하)의 요청이 있으면 특허청 조사과의 영업비밀 전문 강사가 귀사(귀하)를 방문하여 단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 드립니다.
-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관한 이해를 돋기 위해 각종 자료나 안내서를 비치하여 요청이 있으면 제공해 드립니다.

### 영업비밀 보호 상담센터

전화 568-0121 (직통)  
568-8150 (273, 274) FAX : 553-9584